

시행 안내(2023.7.25.)

# 서울시 중구 식품점객업 옥외영업 조례



#2023. 7. 25. 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## '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' 제 4조

- 2층 이상 난간 설치 의무(1.2m' 이상)
-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 불가
- 화재발생위험 시설(난로, 보일러 등) 설치 불가
- 옥외영업장 밀폐 및 고정 구조물 설치 불가
- 이동식 구조물(파라솔, 테이블, 어닝 등)만 설치 가능



## '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' 제 5조

- 데우기 등 조리행위 불가
- 영업 후 폐기물·이동식 구조물 정리 및 청결유지
- 소음민원 발생시 손님에게 주의요청 등 즉시 개선
- 건물내외 영업장 합계면적 100m' 이상 재난보험 필수 가입



## '영업제한' 제 6조

- 일반주거지역 23:00 ~ 익일 07:00 옥외영업 금지

#자세한\_내용은

#중구청\_홈페이지

#구보 제3013호